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14 |
|----------|-----|

2017. 6. 22. (목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7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6월 9일

(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옥진 행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2.3.) 및 동법 시행령 제정 (2017.2.3.)에 따른 조례 개정

## 나. 주요내용

-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: 학교환경정화 → 교육환경보호
- 기존 위임사항 삭제 및 동 법률에 의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
-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업무권한 교육장 위임 (안 제5조제33호)
- 교육공무직원 임용에 대한 교육장·학교장 업무권한 위임 (안 제5조제31호가목 및 나목, 제6조제10호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’ 관련 사항 신설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에 대한 업무권한 위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라목 중 “학교환경정화”를 “교육환경보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1호가목 중 “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”를 “소속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·관내 전보·임지지정·휴직(6개월 이상)·복직(6개월 이상 휴직)·해고·징계

제5조에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2.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, 위원의 해임·해촉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
33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

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교육공무직원의 휴직(6개월 미만)·복직(6개월 미만 휴직)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<br/>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“관할학교”라 한다)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<br/>가.~다. (생략)<br/>라. 학교체육·보건 및 <u>학교환경정화</u>에 관한 사항<br/>마.~자. (생략)</p> <p>2.~27. (생략)</p> <p>28. <u>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</u></p> <p>29.~30. (생략)</p> <p>31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」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</p> | 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<br/>-----.</p> <p>1.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가.~다. (현행과 같음)<br/>라. 학교체육·보건 및 <u>교육환경보호</u>에 관한 사항<br/>마.~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~27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29.~30. (현행과 같음)</p> <p>31.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
가.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·관내 전보·임지지정·휴직·복직·해고·징계

<신 설>

나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가. ----- 소속기관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나.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·관내 전보·임지지정·휴직(6개월 이상)·복직(6개월 이상 휴직)·해고·징계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32.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, 위원의 해임·해촉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

33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의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

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 
-----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교육공무직원의 휴직(6개월 미만) · 복직(6개월 미만 휴직)

# 관 계 법 령

□ **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** [시행 2017.2.4.] [법률 제13937호, 2016.2.3. 일부개정]

제5조(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)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
⑨ 시·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** [시행 2017.2.4.] [대통령령 제27830호, 2017.2.3. 제정]

제11조(지역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직원, 관련 기관의 공무원,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지역위원회가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 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⑥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임·해촉)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(授受)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
5.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6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**제15조(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)**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**제21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** ⑤ 교육감(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)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**제2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)** 교육감(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)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□ **학교보건법** 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402호, 2016.12.20. 일부개정]

**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)**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(校舍) 안에서의 환기·채광·조명·온도·습도의 조절, 상하수도·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, 오염공기·석면·폐기물·소음·휘발성유기화합물·세균·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·식품·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,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**학교보건법 시행규칙** [시행 2017.3.1.] [교육부령 제107호, 2016.9.1. 일부개정]

제3조(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) ①「학교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·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이하 생략)